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 . . . (제 회)	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
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상임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 . 12 . 00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('24.1.31)됨. 이에 따른 자율적 책임경영체계 실현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평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기관 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과 자체평가 결과 제출 기한을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·제출 기한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(안 제11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, 2호 삭제)
- 나.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(안 제12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, 2호 삭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2. 24. ~ 2025. 2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구분”을 “성과평가실시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구분”을 “성과평가실시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2025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2025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·제출) ① · ② (생략)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기관운영계획: 소관 연구기관의 장이 임명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. 연구사업계획: 직전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④·⑤ (생략)	제11조(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·제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성과평가실시계획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) ①·② (생략)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12조(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성과평가실시계획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<u>1.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</u> <u>결과: 소관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</u>	<u><삭 제></u>
<u>2.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</u> <u>결과: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</u> ④ (생 략)	<u><삭 제></u> 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932